

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 
제 1 차 산 업 건 설 위 원 회  
2018. 11. 26(월) 14:00

**「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**

**제 안 설 명 서**

(윤종호 의원 대표발의)



**구 미 시 의 회  
산업건설위원회**

# 제 안 설 명

□ 안녕하십니까?

윤종호 의원입니다.

□ 먼저, 「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

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 
양진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 
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본 개정 조례안은

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침입범죄를  
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 
우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

방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 
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.

□ 주요내용은,

안 제8조 및 제9조를 신설하여,  
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 
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 
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,  
기초연금 수령자 중 홀로 거주하는  
사람 등에 대하여  
시가 방범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  
침입범죄에 대한 범죄발생 기회를 줄이고  
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 
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.

□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 
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 
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 
감사합니다.